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 계 학 과

배 종 응

2013년 8월

#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고 성 효

배 종 응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배종응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년 8월

# A Study on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 of Religious Corporations

Jong-Oong, Bae  
(Supervised by professor Seong-Hy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3
제 1 절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 .....	3
2.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	4
제 2 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 .....	5
1. 종교법인의 특수성과 현황 .....	5
2. 종교법인의 회계제도 .....	13
3.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및 출연재산 .....	16
제 3 절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38
1. 종교법인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38
2. 출연재산에 대한 연구 .....	4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 차이점 .....	44
제 3 장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분석 .....	45
제 1 절 A종교법인의 사례분석 .....	45
1. A종교법인의 개요 .....	45
2. A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	46
3. A종교법인 사례분석 .....	47
4. A종교법인의 재무제표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표시지침서와 비교 .....	51
제 2 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에 대한 분석 .....	57

1. 종교법인의 회계기준 제정 .....	57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57
3. 출연재산의 보고이행 및 관리 .....	58
4. 감가상각의 도입 .....	58
제 3 절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분석 .....	59
1. 법인세법상 종교법인 .....	59
2. 소득세법상 종교법인 .....	60
3. 부가가치세법상 종교법인 .....	61
4. 상속·증여세법상 종교법인 .....	61
제 4 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62
1.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62
2.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65
제 4 장 결 론 .....	67
<참고문헌> .....	70

## <표 목차>

<표 2-1> 비영리공익법인의 유형(2010년) .....	7
<표 2-2> 제주 종교 현황(2013년) .....	8
<표 2-3> 종교유형별 종교인구 현황(2005년) .....	9
<표 2-4> 제주도 종교인구 현황(2005년) .....	9
<표 2-5> 제주도 성별 종교인구(2005년) .....	10
<표 2-6> 제주도 연령별 각 종단 인구(2005년) .....	10
<표 2-7> 종교별 교세현황(2008년) .....	11
<표 2-8> 종교별 교세 증감현황(2008년) .....	12
<표 3-1> A종교법인의 2012년 대차대조표 .....	44
<표 3-2> A종교법인의 2012년 수지계산서 .....	46

##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고찰하고, 실제 종교법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 및 출연재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교법인의 회계보고는 종교법인이 정부기능 대행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고유목적 사업이 잘 수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간섭이 배제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잘 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운용여부와 관계없이 목적 외 사업의 종류가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기장의무는 현재 대부분 종교법인이 영세하므로 종교법인 전체를 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세법상 기장의무가 부여된 일정규모(총자산 10억 이상이면서 출연재산이 5억 이상)이상의 종교법인에 한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며 종교법인의 재무보고가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동검증이 가능한 복식부기로 작성하도록 함으로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내·외부 출연한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는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은 대부분 종교법인이 자체적·임의적으로 시행하는 내부감사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에 의거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가 대부분 형식화, 명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강제화·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정대로 종교법인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과세당국도 종교법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의 본래 목적에 따라 출연재산이 사용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고 규정한 법규에 따라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의 엄격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법인이 보다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를 위해 종교단체 내부 운영회 등 내부통제제도가 있으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 평가함에 ‘2005 모범규준에 따라 표준화된 회계기준 적용에 중요한 내적기능이 될 것이다.

넷째 종교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문제는 정부역할 대행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비과세토록 해야 하는 이유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등 특례방법에 따라 환급받으므로 환급절차가 번거롭기만 할 뿐 아니라 이는 잘 몰라 환급받기 위한 종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감안하면 종교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종교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 협력의무는 종교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종교법인이 빈번하게 매입세금계산서 등 자료제출을 누락해온 사례를 악용하여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개선하고 종교법인의 입부 업무착오에 과도한 제재를 고려하여 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1/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종교법인과 거래질서가 바로 되고 종교법인과 거래가 정상화 될 것이다.

다섯째 본연구의 주 포인트는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문제이다. 이는 출연재산의 보고문제와 함께 출연 받은 거액의 재산을 용도 외 사용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지로 출연재산의 용도의 사용문제가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다룰 뿐 아니라 일부 종교법인을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고 출연자의 부의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도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의 용도 외 사용부분은 종교단체의 눈치만 보지 말고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며 다른 일반 영리법인과 형평성 문제도 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인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현재 들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대효과가 크다.

또한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증 분석이 어려웠다. 향후 국내 종교법인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보다 실증적인 분석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verall status of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 of religious corporation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 and contributed property of religious corporations through case studies,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irst, in this study accounting reports of religious corporations were investigated. Government and external institutions should not interfere but support them so that they can achieve their original purpose of corporations. However, when religious corporations perform profitable businesses other than original purpose, they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profitability regardless of the use of profits to original purpose businesses. As most of religious corporations are small, it is impractical to make book keeping duty compulsory. Therefore, book keeping duty is limited to religious corporations that are specified i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Law (more than 1 billion won of total asset and more than 500 million won of contributed property). Financial report of religious corporations should be recorded according to book keeping by double entry which allows automatic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duplicity of accounting and the principle of debit and credit average so that it can provide concerned people with accurate information and they can compare financial status and achievements.

Second, in most religious corporations, contributed property is audited by internal auditing which is voluntary and arbitrary and external auditing by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se auditing are mostly perfunctory and cursory.

Because of this, they make it compulsory and a duty to report the contributed property according to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Law, but the provisions are not performed accordingly. Additionally, tax authority do not make thorough management not to offend religious corporations.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if contributed property is being used and managed according to original purpose, thorough management on the contributed property is needed such as submittal of “Contributed Property Report of Public Incorporation and others” and the religious corporations that have not submitted such report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should have penalties such as surtaxes.

Third, although there is internal control system such as Internal Operational Committee in religious corporations to prepare and post accounting report according to appropriate and proper accounting standards, ‘Standardized Accounting Standards according to Model Norms in 2005’ will be an important internal function to the in the evalu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Fourth, the reasons why religious corporations should be non taxed as in foreign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delegation of government are that tax should be refunded when they have interest income only. It is bothersome to get withheld and then to get refunded according to special regulations such as separated taxation and there may some cases that they cannot get refund of the withheld interest income because they don’t know about it. Considering this, non taxation on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of religious corporations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dditionally, religious corporations become a hotbed of tax evasion as counterparts of religious corporations make use cases that religious corporations have not submitted materials such as sales invoice. Therefore, to improve those problems an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over punishment of unintentional business mistakes of religious corporations, it is recommended to impose additional tax which is equal to 1/10 of additional tax for profit making corporations. With this, there should be an order in transactions with religious corporations and all transactions can be normalized.

Fifth,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he post management of contributed property. It is because use of contributed property for other purposes than the original purpose is increasing as well as the issue reporting of contributed

property. Actually, use of contributed property for other purposes than original purpose becomes a social issue. However, taxation authority does not pay attention to those problems and there can be some religious corporations that may evad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the name of public good and charity and misuse it as the way of increase of wealth. There should be a device to enforce post management of contributed property. Now, government should enforce laws and regulations not worrying about offending religious corporations and should think about the equity with other profit making corporations. As this study identify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 by connecting accounting system and taxation system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expected effects are very big. Additionally, as there were insufficient objective statistical materials on accounting system and taxation system of religious corporations, it was difficult to make more systematic empirical analysi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more empirical analyses and diversified studies based on more accurate and useful statistics on domestic religious corporation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비영리조직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 비영리조직 가운데 종교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61.3%(17,863/29,132개)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종교법인들이 출연 받은 현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은 건전한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투명성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관리부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종교법인은 그 재무상태와 운영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때로는 종교 법인들의 조세우대 정책을 악용할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종교법인도 건전한 사회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재산에 대한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의 활동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법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종교법인은 종교의 자유성 추구라는 명분하에 각종 세제 혜택과 고유 업무를 벗어난 수익사업으로 영리법인과 과세문제의 형평성 논란이 요즘 크게 부상하고 있다. 본래 종교단체는 신도의 교화·선교·전도·기타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이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 비과세하고 보고의무도 거의 지지 아니하며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이에 편승한 종교법인의 회계 및 세무 제도는 조세피난처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문제와 특히 출연재산의 용도와 사용이나 수익사업부분까지 암묵적 특혜로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공헌을 하여 왔던 수많은 종교단체들까지 투명하지 못한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씌워져 있어 이를 벗기 위해서도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부분 특히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과세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관점과 사회적 운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분석 고찰하였다.

첫째,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관점에서 현재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원천이 되고 있는 2003년에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는 너무 복잡하여 소외되어 왔다. 또한 제정 된지도 10년이 지나 지금의 상황에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법상 분석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종교법인의 조직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전문인력과 운영체계가 조직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관련 회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종교의 고유목적에 따라 운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부동산 임대 등 용도외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의 사후관리 부재 및 관리부실로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그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 법인에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무조건 지원한다면 오히려 부의 축적이나 세습수단으로 남용된다. 그러므로 출연재산의 제도적 사후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종교법인의 운영성과의 비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종교법인을 단순히 과세목적이나 외부적 통제의 측면보다 종교법인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비영리조직 가운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회계제도 및 과세제도 그리고 출연재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교단체의 폐쇄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과세제도 및 출연재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국내 각종 도서, 연구논문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 학술지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 제도를 살펴보았다. 비영리법인 및 종교법인의 특수성과 현황, 종교법인의 회계 및 예산의 특징,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연구를 통해 제안되어온 문제점과 개선책을 참고하여 연구하였다.

제3장은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A종교법인의 개요, A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A종교법인의 사례분석, A종교법인의 재무제표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지침서와 비교하였다.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개정방향,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재무제표 양식의 표준화, 출연재산의 보고이행과 관리 등에 대한 분석과 이로 인한 사안별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사안별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 1 절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

#### 1.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

##### 1) 개요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영리법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이 전근대적이다. 공공기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등 각 영역별로 설립근거 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회계처리지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영역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별로 회계처리방법이 다르거나 회계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회계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2003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지침서를 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지침서 내용이 복잡하고 실무담당자 능력 결여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법인간의 비교가능성, 내부투명성 문제, 성과측정의 불분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사용하기 용이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공공기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등 각 영역별 설립근거법과 설립근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정부회계처리기준, 공기업 회계사무규칙,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적용, 종교법인은 별도규정이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 및 각종 세법상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법인 또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가 과세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후술하는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서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에서 종교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에게 많은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 제 2 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

### 1. 종교법인의 특수성과 현황

#### 1) 종교법인의 특수성

##### (1) 종교법인의 개념

종교법인은 선교나 포교, 구료 및 자선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위하여 종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부수적으로 병원, 청소년 시설, 유치원, 양로원, 부랑인 보호시설 등 여러 사회공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헌금이나 기부금등의 출연을 통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해 법인이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영위한다.

고유목적사업에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대부분 종교 법인에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청산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나 동법인과 유사한 종교단체에 기증하도록 하며 민법 제 80조의 잔여재산 귀속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목적으로 성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바로 종교 법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로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다. 단 재단·사단법인 형태를 띠지 않는 개별 교회, 사원 등은 국세기본법<sup>1)</sup>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 법인으로 의제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산, 그밖에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2) 종교법인의 특수성

종교법인은 신자의 교화·선교 및 기타 구제사업·사회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자의 현금·기부금으로 조달한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당초 설립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며 이 뿐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닌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조직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좌우된다.

종교 법인을 요약하면 1)

①종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않으며, 종교법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일방적으로 소비·지출하는 비영리법인이다.

②종교법인은 신자의 현금·기부금 등을 통하여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조달하며 신자들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형태로 자신들의 자원을 종교법인에 귀속시키므로 자신들이 제공한 자원의 설립목적은 이루기 위해 자금을 귀속시키므로 자원을 제공한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효익도 요구하지 않는다.

③종교법인은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법인의 자산·부채·기금 등은 모두 당해 종교법인의 실체에 귀속하게 되며, 일반적인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지분의 매매·교환·상속·배당·잔여재산의 실체에 귀속되게 되며, 일반적인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지분의 매매·교환·상속·배당·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한 회계가 성립될 수 없다.

④대부분의 종교법인은 설립목적상 종교 활동을 위한 교화·선교뿐만 아니라 기타 구제사업·사회사업 등을 병행하면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3) 종교법인의 회계 및 예산의 특징

종교법인의 회계는 종교법인의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신자들로부터 받는 현금·기부금 등을 종교 활동의 고유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의 회계는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한 자본개념이

1) 김기열·삼일회계법인(2008) P.1265에서 인용함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재산 또는 기본금,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본재산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자산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인 역사적 원가로 평가되어 있기에 순자산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기 보다는 명목상의 재산 상태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의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처리

종교법인의 회계는 예산에 기초한 현금주의·단식부기에 따르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며 회계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로 망라되어 있는 실정이다.

### ② 감가상각 미수행

감가상각이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다. 원칙적으로 자산 구입 시 자금지출은 구입시점에 발생하며, 구입시점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자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은 유보된 자금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 ③ 종교법인회계의 구분경리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교법인의 특수성에 따라 종교법인의 고유목적뿐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향함에 따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수익사업회계는 일반 영리법인이 적용받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하여야 하므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2) 종교법인의 현황

### (1) 비영리법인의 현황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2010년 말 기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총 법인 수 440,000개의 6.62%에 해당하는 29,132개가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한다.

<표2-1> 비영리공익법인의 유형

(단위: 개)

법인 연도	비영리 공익법인							
	소계	종교	사회 복지	교육	학술, 장학 및 자선	문화	의료	기타
2010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2009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2008	27,811	17,586	2,693	1,745	2,960	572	503	1,752
2007	27,793	17,591	2,692	1,751	2,937	561	495	1,766
2006	27,500	17,135	2,617	1,858	2,837	493	478	2,08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년~2010년

### (2) 제주도 종교법인 현황

제주도 종교 법인현황은 2013년 2월 현재 총 740개이고, 이 중 개신교가 396개로 전체의 53.5%로 가장 많다. 불교는 271개로 36.6%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천주교는 28개 3.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제주종교현황

(단위: 개소)

계	불 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 교	수운교	통일교	비고
740	271	28	396	18	4	15	8	전통시찰 12개소

※ 2013년 2월말 현황

### (3) 제주도 종교인구 현황

2005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종교 인구는 24,97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이며, 1995년에 비해 2.4%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유형별 분포를 보면 총 인구 중 불교인구가 22.8%로 가장 많고 개신교 18.3% 천주교 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대 종교 중 불교와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천주교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노 병성 2011 p9)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불교인구가 173,658로 32.7%로 전국평균에 비해 10%이상 종교인구가 월등히 높으며, 그다음으로 천주교가 전국평균(10.9%)과 유사한 10.3%이고 개신교는 전국평균(18.3%)에 비해 절반 이하인 7.2%에 불과하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천주교 종교 인구가 개신교보다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종교유형별 종교인구 현황

(단위: 천명%)

구분	1995		200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인구	44,554	100.0	47,041	100.0	2,488	5.6
종교있음	22,598	50.7	24,971	53.1	2,373	10.5
• 불 교	10,321	23.2	10,726	22.8	405	3.9
• 개신교	8,760	19.7	8,616	18.3	-144	-1.6
• 천주교	2,951	6.6	5,146	10.9	2,195	74.4
• 유 교	211	0.5	105	0.2	-106	-50.4
• 원불교	87	0.2	130	0.3	43	49.6
• 기 타	268	0.6	247	0.5	-21	-7.7
종교없음 *	21,958	49.3	22,070	46.9	117	0.5

※ 종교 없음에는 종교미상 포함 현재 국가통계포탈에서는 종교인구조사는 2005년 이후는 조사사실 없음  
 자료 :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탈) 총 조사인구(2005)

<표 2-4> 제주도 종교인구 현황

(2005년도 통계청 인구센서스/ 명)

구분	종교인구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기타
제주	272,590 (전체인구의 51.3%)	173,658 (32.7)	54,764 (10.3)	38,183 (7.2)	1,212 (0.2)	1,687 (0.3)	3,086 (0.6)
전국	24,970,766 (전체인구의 53.0%)	10,726,463 (22.8)	5,146,147 (10.9)	8,616,438 (18.3)	129,907 (0.3)	104,575 (0.2)	247,236 (0.5)

성별 종교 인구를 보면, 남자는 49.7%, 여자는 56.4%로 여자가 6.7% 높게 나타나고 연령별 종교인구의 비율은 남자는 50대-60대와 유아를 제외하면 30대가 43.8%으로 가장 낮으며 여자는 60-70대에서 68%정도로 가장 높고 20대가 49.3%로 가장 낮다

<표 2-5> 제주도 성별 종교인구

구분	종교 인구 비율		
	계	남자	여자
계	53.1	49.7	56.4
0~9	43.6	43.2	43.9
10~19	50.6	49.9	51.4
20~29	49.1	49.0	49.3
30~39	47.9	43.8	52.1
40~49	56.5	51.0	62.2
50~59	62.7	57.6	67.7
60~69	63.3	57.9	68.0
70~79	63.3	56.2	67.9
80~84	62.5	54.5	66.2
85이상	60.6	53.4	63.0

자료 :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탈) 총 조사인구(2005)

<표 2-6> 제주도 연령별 각 종단인구

(단위 : 명)

연령별	내국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종교있음
0~4세	32,016	6,220	2,085	2,396	28	34	10,897
5~9세	41,944	9,767	3,479	4,039	44	79	17,585
10~14세	42,331	11,356	3,631	4,924	56	107	20,260
15~19세	33,009	9,450	2,544	4,085	49	110	16,373
20~24세	37,905	10,858	2,912	4,368	46	73	18,444
25~29세	36,289	10,083	2,284	3,190	78	54	15,879
30~34세	45,341	12,488	2,972	3,828	75	70	19,648
35~39세	47,505	14,521	3,436	4,362	68	102	22,719
40~44세	44,558	15,942	3,363	4,943	98	122	24,721
45~49세	39,048	15,415	3,009	4,858	65	68	23,645
50~54세	28,075	11,595	2,149	3,736	76	73	17,826
55~59세	24,992	11,116	1,703	2,810	133	43	16,005
60~64세	22,270	10,389	1,301	2,224	183	47	14,345
65~69세	19,831	9,356	1,148	1,682	266	54	12,698

70~74세	15,700	7,120	869	1,377	235	48	9,839
75~79세	9,259	4,022	624	903	94	30	5,749
80~84세	6,163	2,418	398	605	65	39	3,583
85세이상	4,450	1,542	276	434	28	59	2,374
합계	530,686	173,658	38,183	54,764	1,687	1,212	272,590

#### (4) 전국 종교별 교세현황

우리나라의 종교단체 및 신도현황표로서 신도수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단, 법인, 교당, 교직자수에서는 개신교, 불교와 천주교 순으로 개신교 교회중 규모가 적은교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종교별 교세현황

구분 종교별	2008년 단체수 (개)	2008년 교당수 (개소)	2008년 교직자수 (명)	신도수(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교	103	21,935	49,408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124	58,404	96,154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511	14,597	5,146,147	2,950,730	1,865,397
유교	1	1,049	300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8	1,50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61	1,886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22	3,766	7,603	11,030
그 밖의 종교	38	6,710	201,488	197,635	232,209	175,477
계	270	90,300	365,355	24,970,766	22,597,824	17,203,296

※ 단체 수, 교당 수, 교직자 수, 2008년 12월 20일까지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집계한 것임.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회에 보고된 경우가 대다수임

※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4,553,710>

※ <’0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7,041,43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8 김명돌,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의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26

<표 2-8> 종교별 교세 증감현황

구분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02	2008	증감 (%)	2002	2008	증감 (%)	2002	2008	증감 (%)
불 교	105	103	▼ 2	22,072	21,935	▼ 1	41,362	49,408	△ 19
개신교	170	124	▼ 27	60,785	58,404	▼ 4	124,310	94,615	▼ 24
천주교	1	1	0	1,258	1,511	△ 20	12,536	14,597	△ 16
유 교	1	1	0	730	1,049	△ 44	31,833	300	▼ 99
천도교	1	1	0	283	108	▼ 62	5,670	1,500	▼ 74
원불교	1	1	0	520	561	△ 8	2,455	1,886	▼ 23
대종교	1	1	0	109	22	▼ 80	358	22	▼ 94
그밖의 종교	44	38	▼ 14	4,992	6,710	△ 34	280,685	201,488	▼ 28
계	324	270	▼ 17	90,749	90,300	▼ 1	499,209	363,816	▼ 27

※ 유교의 교당 수치는 향교, 서원(書院), 사우(祠宇)를 합산한 것임.

※ 대종교의 경우, 현재 양측 수치의 합산이 어려운 상황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8

## 2. 종교법인의 회계제도

종교법인의 회계제도는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인 선교·포교활동을 통하여 영속적인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종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유한성 하기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교법인의 회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목적이 서로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란 더더구나 곤란하다. 종교 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종교법인과 차이는 있으나 2003년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제정한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가 종교 법인이 적용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이 지침서에 따라 종교 법인에 대한 사례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영리법인란 조직의 출연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출연재산의 합목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회계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의 재정은 일반신자들의 현금, 기부금으로부터 조성되어 종교 활동에 따라 지출·관리되지만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처럼

제공한 자원에 대한 경제적 효익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 법인이나 종교 단체는 종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뿐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조직으로써 종교조직의 유지 및 관리, 효율적인 재정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회계시스템의 적용이 요구된다.

종교법인의 회계는 종교법인의 경영자가 위탁한 종교단체, 당해종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회계이다. 당해종파 뿐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의 기초위에 이윤동기가 없으며 종교라는 고유목적에 위해 자금을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비영리회계이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의 회계는 사적소유에 지분이 없으며 지분의 매매, 교환, 상속, 배당, 잔여재산 등에 관한 회계가 있을 수 없다.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자나 기부자, 현금자에게 정보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재무회계를 신뢰성 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목적에 적합한 회계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회계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심지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sup>1)</sup>는 수지계산서와 재산목록 중심의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를 전제로 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기준이 없이 실무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수지계산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 1) 개신교의 회계제도

개신교의 회계제도는 198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교회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총6장(총칙,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감사) 제73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운영계획서를 포함하여 50개 서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홍보의 미비로 대부분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교회의 회계담당자조차도 교회회계기준의 존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회계기준이 있는 것을 알고도 회계담당자들이 그 기준이 실제 적용 불가능함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07년 11월8일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의 참여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재정 확립네트워크'에서 교회회계규칙이라는 것을

1) 1998년 2월 28일부터 문화관광부였으나, 2008년 2월 29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변경

제정 발표하여 각 개별교회에서 재정운용을 교단별 교회별 상황에 따라 조정 적용 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즉 교회재정 건강성운동에서는 교회재정의 투명성, 교회다운 재정원칙,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아주 낮은 상태이다..

## 2) 불교의 회계제도

대한불교조계종 법령집에서는 불교사찰의 대표로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대한불교조계종)의 회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은 불교문화의 선전, 포교, 사회, 교육사업 및 기타 사업을 행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단의 예산회계법(1995.12.4 개정공포)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의 예산(총무원 기획실 소관)과 회계(총무원 재무부 소관)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따로 정하며,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해당 소속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종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말사는 2월 10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원의 재무부장은 중앙부장기관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하여 총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총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즉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기부식(single-entry bookkeeping)에 의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2011 노병성 P16~17)

## 3) 천주교의 회계제도

천주교(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는 1938년 등록하였고 제 교회와 교구에서 설립·경영하는 선교·구제·자선사업과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천주교회법 제1282조에 따르면 성직자나 평신도나 합법적 명의로 교회 재산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정관리규정을 재정하여 총9장(총칙, 재경위원회, 예산편성집행 및 통제, 회계, 회계처리와 장부, 증빙성, 현금회계, 자산회계, 결산, 계약) 136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규정에 회계원칙은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전산처리하며 본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및 출연재산

#### 1) 종교법인의 법적 과세제도<sup>1)</sup>

##### (1) 우리나라 종교법인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대법원 판례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또는 의료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 목적 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이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라고 하면서 비과세의 근거를 공익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하고 있다.

##### ① 조세회피 방지

옥무석 외(1999)의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설립취지와 그 사업 목적에 있어서 공익성이 강도됨에 따라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에

1) 위 내용은 노병성(2011)pp.22~25와 31~33에서 인용하였다.

대해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하거나 과세를 경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자산의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 설립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조세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한하고 과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 ② 영리법인과 조세의 형평성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은 동일한 수익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리법인과 세제의 측면에서 비교 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되나, 이것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조세혜택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상의 형평문제가 발생한다.

## ③ 세수의 감소방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은 국가의 전체 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은 결국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조세부담금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내지 면세의 태도에서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등을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 (2) 국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 ① 법인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 종교단체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종교 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의 요건이 맞을 때 법인으로 보게 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되면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등록증의 차이는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가이며 고유번호등록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여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가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으로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취급을 받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규정함에 있어서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와 제19조 손비의 범위는 익금과 손금 항목의 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해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항목이면 익금,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항목이면 손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소득세법은 열거 주의 방식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율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처럼 의도적인 이윤동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리법인에게만 부과한다면 조세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저해한다. 따라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 수익사업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종교단체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모든 수익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110조에

서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모든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종교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 년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종교법인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속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만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 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① 취득세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신출,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한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세가 과세되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규정된 특정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법적 실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교단체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개인)로 간주되는 경우 모든 적용되는 규정이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등록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등록단체라고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종교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로 비과세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종교단체 명의로 아닌 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지 않는다.

## ②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및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등에 부과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30조에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는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취득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단체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등록세 비과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③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면 사용·수익하는데 대한 과세로서 수익세로의 성격을 가진다.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사업 외에 자선, 구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선·구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 2) 종교법인의 신고납부

#####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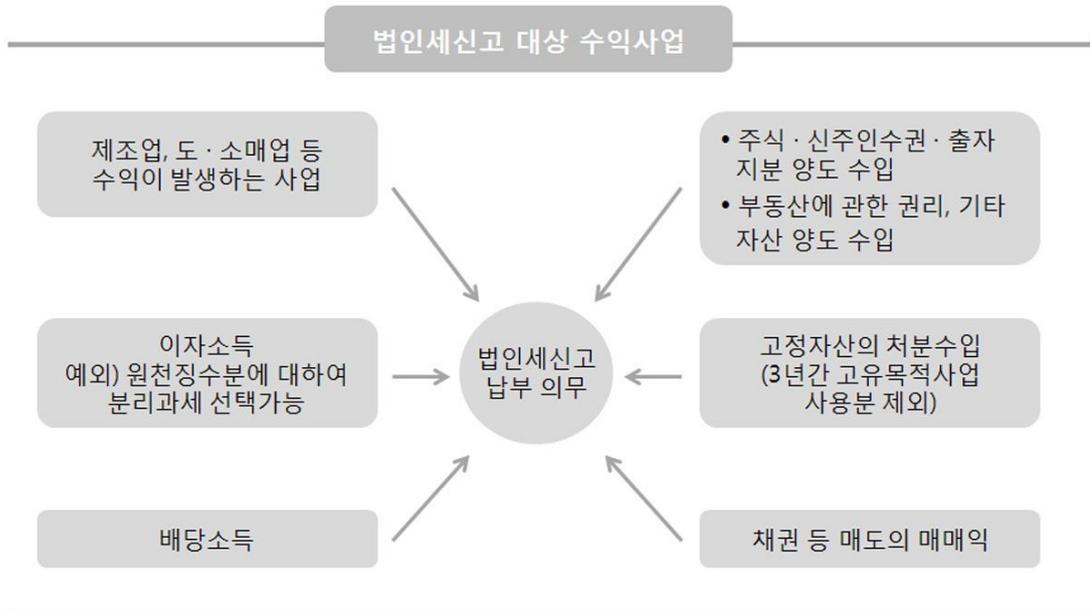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1)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3) p.18~61 요약

## ①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유형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법법 §3 ③)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2 ①) 이 중 수익사업의 제외대상으로서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법령 §2① 2의2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2013.2.15.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가.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 차.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금 및 공제업 중 법령 §2①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 사회보장보험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12①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속단체는 '11.1.1. 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철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다만, '09. 2. 4.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다만, '11. 1. 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제외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됨(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가능)  
다만, 상증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상증법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 ②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 손익의 구분경리

개별손익금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 하며, 공통손익금은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투명한 공통 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다.

-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또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 계산한다. (법통칙 113-156...5)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법통칙 113-156...1)

**- 수익사업의 자본금**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지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한다.

$$\begin{aligned} & \text{수익사업의 자본금} \\ & = \text{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text{수익사업 부채 (충당금 포함)합계액} \end{aligned}$$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간의 자본원입(법규칙 §76③, ④)**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시가)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법통칙 113-156...2)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9①)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소득 (법법 §29①)

법인세법상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은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 잔액(100%)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는데 소득세법§16①의 이자소득의 금액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50% 적용대상)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포함
- 법령 §2① 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채권 투자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 포하고 소득세법 §17①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해당되고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설정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정 대상금액(법법 §74, §121의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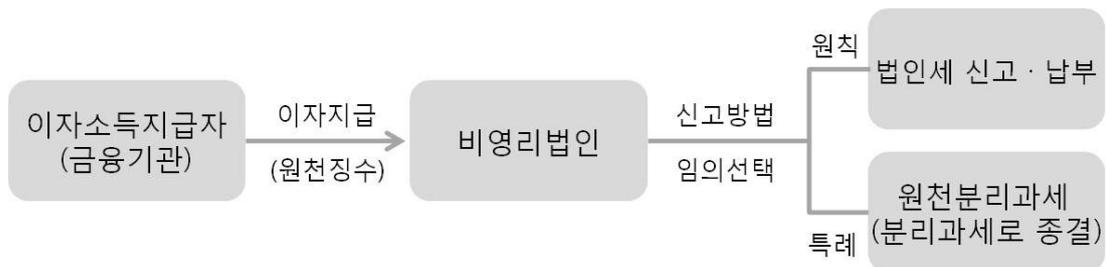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원칙: 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법 §29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61①)신고 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법법 §61①) 손금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해당 준비금의 익금 산입 시 익금 산입액 보다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달 적립금 또는 초과 처분액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한다.

다만,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 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통치 61-98...1)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즉,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법법§62)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령§62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법규칙 §82②)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 납부한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차대조,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납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다.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begin{aligned} \text{각 사업연도 소득} &= \text{익금} - \text{손금} \\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등} \end{aligned}$$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고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60)

②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법인세법 §62의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begin{aligned} \text{과세표준}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자본적지출액} - \text{양도비}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 \\ &\quad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 \end{aligned}$$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세액의 신고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조의2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당해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법법 §62의2⑧ 단서규정)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법법 §99의2⑤ 단서규정)

## 양도자산이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지정지역 속재 토지·건물 등 양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법 §62의2②)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한 출연재산에 대한 지원

#### ①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규정한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을 말하되,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48②본문단서, 상증령 §38①)

## ②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16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당해 자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

###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 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상증령 §13 ②)

### ③ 출연시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08.12.26)

### ④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의 5%(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48 ①)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 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등을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 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부법 §12 ① 17호, 부령 §3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함)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 관리용역

-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은 [부통칙 12-37-2]

주문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산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고철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

## ②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12 ② 4호)대상으로는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 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5) 출연자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 ①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소법 §88 ①, 소령 §159)는

출연자(개인)가 공익법인에게 채무인수 조건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채무상당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② 부담부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부법 §88 ①, 소령 §159)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용 자산을 공익법인에게 채무인수 조건부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2) 종교법인의 출연재산<sup>1)</sup>

### (1) 출연재산의 범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출연 이라하며, 상속 세법상 출연에는 증여·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sup>2)</sup>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비과세할 때의 출연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본래 상속재산이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유증(遺贈: 死因遺贈 포함) 혹은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sup>3)</sup>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에는 물건,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되며, 법률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즉, 영업권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질권,

1) 장만식,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출연과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3항

3) 민법 제 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저당권 또는 타행권과 같은 종(從)된 권리는 주(主)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sup>1)</sup>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되며, 피상속인이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인정상여(認定賞與)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법에는 민법상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이를 간주(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세법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sup>

- ① 생명보험료 및 손해보험금
- ②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
- ③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 이외의 퇴직수당, 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을 말한다.

## (2) 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sup>3)</sup>

### ① 최소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첫째, 생전(生前)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둘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즉, 유언으로

1) 상속세법 기본통칙 9... 1

2) 상속세법 제7조, 제8조

3) 상속세법 제7조, 제8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 출연된 것으로 보며, 실제 법인 귀속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가능하지만 그 효과를 사망으로 소급하여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미 설립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등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의한다. 즉, 부동산 등기·등록대상 자산은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한 시점에서, 동산은 인도시점에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출연권자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자이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출연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sup>1)</sup>

① 상속인의 의사(意思) (상속인이 2인 이상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다.

②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 제 3 절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1. 종교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오정우(2002)의 연구에서는 종교법인 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법인세법등 개별세법상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3항

조세정책 및 세제지원을 분석하였고 종교법인의 세무처리를 실무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교법인의 기존과세제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교법인의 재무보고기준과 복잡한 조세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를 일원화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종합 과세신고방법으로만 신고하게 하거나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의 차별화를 철폐하여야 하며,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해도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르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종교재산기본법(안)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법인에게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종교법인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완석 외(2005)의 연구에서는 종교단체는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에 부수적인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을 가정하여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종교단체의 비열거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할 수 없다. 과세소득은 열거주의에 의하여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제외 소득이 된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와 감면제도는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을 배제하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과권의 유보를 의미한다.

예상국(2006)의 연구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현행조세법상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아보고, 종교단체의 소유재산이나 거래행위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둬으로써 종교단체에 조세우대조치의 근거를 검토하고 조세우대조치의 사후관리 및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세문제를 다루고 시스템 발전에 법규가 제때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종교단체에 부동산, 주식, 출자 자본으로 현금을 출연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출연재산종류에 따라 차별문제를 제기한다.

장진범(2006)의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종교단체의 세법상 취급을 살피고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현행세법과 판례가 종교단체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으로, 종교단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

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재정의 투명성과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력의무 미 이행시 가산세 강화 규정 및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 통일된 회계준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종교단체 성직자가 성실 납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인세법상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도 100%로 확대하는 것과 복잡한 기부금제도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기위해서 법인설립절차를 걸쳐야하므로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하는 격이 된다.

김복윤(2006)의 연구에서는 현행 각 세법상의 과세 제도를 설명하고, 일본과 미국의 종교 법인에 관한 조세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조세제도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에 있어서 자산규모범위를 현실에 맞게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부전문가의 확인 횟수도 2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교 법인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 되어 종교법인 이라는 법인격만 취득한 것으로서 탈세의 온상으로 남용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문연식(2006)의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각 세법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탈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종교단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세관청에서 탈세를 포착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적 여건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종교단체의 실정에 맞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준칙)이 제정되어야 하며, 일정 자산 규모의 종교단체에 대해 외부인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하고 재무제표와 감사 자료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와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여 불성실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김주연(2007) 외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와 한·미·일간 세제를 비교하고 비영리 법인의 회계제도의 문제점으로 일관된 회계기준의 부재와 현금주의적 회계 감가 상각이 없는 회계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고 현금주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도입하고 예산과 결산에 기속한 기금회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부의 비치 작성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도입, 과세관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활성화, 출연재산에 대한 미보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채문(2007) 종교 법인에 대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과 고유목적준비금의 적립한도를 100% 증액하도록 개선하고 종교단체의 지원제도 즉 기부금,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의 제출 의무강화와 종교법인의 외부감사제 도입과 회계기준 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성규(2009)의 연구에서는 현행세제상 종교 법인에 별도의 과세규정이 없어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과세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문제점에 기인하여, 국내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종교 법인법 제정과 종교단체에 대한 투명성제고를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수익사업의 범위 명확화와 구분경리의 명확화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과 출연 재산의 사후관리강화,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비과세 관련 등록절차의 정비, 이자, 배당소득의 비과세방안 적극 검토를 제시하였다.

김명돌(2009)의 연구에서는 국내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는 종교법인법 제정과 세제지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투명성제고를 제시하였고, 조세법 상 주요 국세와 지방세 및 기부금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교단체의 법적규정 정비, 종교단체의 투명성 보장, 상속세, 증여세법의 정비, 성직자의 성실납세 유도, 감면대상 종교단체의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주장 하였다.

노병성(2011) 의 연구에서 종교법인의 문제점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복식부기 도입, 재무제표 양식의 표준화와 연결재무제표 도입, 외부감사 실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확대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연희(2012)의 연구에서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의 교회회계를 통하여 성직자의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시대적요구와 통일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결산공시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손정근(2012)의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통하여 회계제도와 재무보고에 대한 만족도는 회계정보의 특성과 공개수준에 의하여 영향여부와 회계제도와 재무보고에 대한

정보의 특성과 만족도의 인식은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 2. 출연재산에 대한 연구

### 1) 공익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비영리법인은 공공성을 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정직한 법인이 있고 그렇지 않는 법인도 있을텐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감사와 같은 기능이 없는 현실에서는 사회적인 불신이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독지가들이 출연을 기피한 경향도 있다.

헌금자, 증여자, 기부자들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재산을 기증할 수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이 투명화 되지 못하니까 헌금자나 증여자나 기부자도 명예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법인의 회계내용이 투명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비영리법인들이 경영이나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들이 당초의 목적사업에 더욱 충실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 외국처럼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경영성과 재무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회계감사를 통하여 회계가 투명화 되면 출연자들이 더 보람을 가지고 출연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투명한 자료를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기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리, 감독, 규제, 사후관리 등 종전의 규제 방법에서 진일보하여 공익사업의 내용, 회계정보, 재산상태, 사업실적 등 공익사업의 모든 내용이 감독관청은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정의, 부의 사회 환원, 국민 제도적인 차원에서 출연내역의 사용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공익사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익사업자는 그들의 사업내용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는 물론 정부의 도움을 유도할 수 있고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종교 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되는 내용에는 사업의 내용, 출연재산 및 재무상태, 앞으로의 계획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사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정착하는데 있어서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유용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외부감사를 받은 정보를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내부감사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감사제도로부터 외부공시제도를 전제로 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은

- (1)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회계제도의 도입
- (2) 관리 및 회계담당자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 교육훈련
- (3) 최고관리자, 이해관계자, 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 및 사회적 관심증대
- (4) 외부공시관련 제 규정의 제정 외부감사제도 포함)
- (5)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기준 제정 (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

종교 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얼마만큼의 자산과 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종교법인을 감독하는 기관은 물론 종교 법인에 현금을 내는 사람으로부터 종교법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우선 관련된 회계원칙들을 잘 정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계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제도는 법제화 하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일정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는 그 규모가 역할의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정부가 충족하지 못하는 복지요구를 충족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공익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범위, 요건 및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부의 감리·감독을 받아 왔으나 그 실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종교법인은 그 사회적 역할이 국민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규모나 기능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발전 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 차이점

먼저 선행연구에서 공통된 내용은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그에 따라 수익사업과 구분기장, 외부감사, 인터넷 공시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도 통일회계기준과 유사한 표준회계시스템을 제정하여 종교법인간에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성과의 비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에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종교 법인에게 회계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자 하고 이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영세한 대부분의 종교 법인에게는 비현실적이며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종교법인은 표준회계시스템으로 체계화 또한 선행연구대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대안으로 상속·증여세 제80조 제9항에 따라 장부 비치·기장의무가산세가 적용되는 종교 법인에게 표준회계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여 자체 투명성과

적법한 정부역할 대행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나 대부분 큰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대형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용도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와 사후관리가 거의 전무하다. 이에 가장 큰 문제점 도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본 연구를 좀 더 기울이어 보았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한 제출 협력업무 해태사례로 거래처까지 광범위한 탈루의 온상이 되게 하고 조세의 피난처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으로 종교법인등에게 출연재산 보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미제출에 협력의무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띤 저율의 가산세 부과 의무를 부여하여 상당부분 종교법인 투명성과 종교법인과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간 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함으로써 종교법인의 건전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도와주면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수행은 더욱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제 3 장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분석

#### 제 1 절 A 종교법인의 사례분석

##### 1. A 종교법인의 개요

A 종교법인은 선교사업과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현재 ○○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재산은 31억은 교회 건물로 사용되고 현금 2.5억은 은행에 예금되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 종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출연재산이 해당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해 종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출연재산의 출연자는 70여명의 현금과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종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연 1회 목록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출연자산 보고서를 연1회 상속·증여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에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에서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제주도문화정책과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2. A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 1) 회계처리

A 종교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와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구분이 되지 않으며 수지계산서로 처리하고 잔액은 운영수지차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일반 영리법인처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운영수지차액으로 구분되어 수익사업회계와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구분경리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과세해당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회계는 우리나라 종교 법인에 대한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A 종교법인에서는 자체 고유의 계정과목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회계처리는 독자적인 필요에 의하여 단식회계로 처리되어진다. 회계처리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변경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과 예·결산서 작성 시 계정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결정한다.

### 2) 장부 및 전표

A 종교법인의 장부는 재무제표와 총계정 원장이 있고, 보조장부로서 현금 출납장 출연기록부, 차입금 기록 등이 있다. 단식회계로 처리하는 고유목적사업에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만 사용하고 있다.

### 3) 재무제표 작성

A 종교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 공시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는 단식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지

않는다. A 종교법인은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키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거래 총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 4) A 종교법인의 세무

A 종교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구분 경리한 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A 종교법인은 과세소득은 이자소득으로써 비록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으로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의 법인세 신고 시 종합과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에 미포함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액은 분리과세로,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손익을 계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은 소득금액의 100%를 그 외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A 종교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면제된다.

### 3. A 종교법인의 사례분석

#### 1) 재무상태 분석

A 종교법인의 자산규모는 2011년 약 53억 원에서 2012년 약 54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유동자산중 제 예금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유동자산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비 유동자산의 변화는 거의 없다

A 종교법인의 부채규모는 2011년 약 17억 원에서 2012년 약 19억 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수보증금의 증가와 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A 종교법인의 자본규모는 2010년 약 53.8억 원에서 2011년 약 51.9억 원으로 2012년에 약 54억 원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A 종교법인은 약 54억 원 규모의 자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채비중이 매우 낮아, 매우 재무상태가 건전한 종교 법인이라 할 수 있다.

<표 3-1> A 종교법인의 2012년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금 액	
<b>자 산</b>		
<b>I. 유 동 자 산</b>		(263,198,342)
(1) 당 좌 자 산		(263,198,342)
1. 현 금	5,198,351	
2. 보 통 예 금	98,209,663	
3. 정 기 예 금	15,868,688	
4. 선 급 금		
5. 선 납 법 인 세	921,640	
<b>II. 비 유 동 자 산</b>		(5,133,403,079)
(1) 투 자 자 산		(765,000)
1. 만 기 보 유 증 권	765,000	
2. 보 증 금		
(2) 유 형 자 산		(5,132,638,079)
1. 토 지	392,600,000	
2. 건 물	4,620,354,929	
3. 차 량 운 반 구 품	29,485,760	
4. 비 품	90,197,390	
<b>자 산 총 계</b>		<b>5,396,601,421</b>
<b>부 채</b>		
<b>I. 유 동 부 채</b>		(9,077,529)
1. 미 지 급 금	2,975,184	
2. 미 지 급 비 용	5,029,800	
3. 예 수 금	1,072,545	
<b>II. 비 유 동 부 채</b>		(8,536,399)
1. 퇴 직 금 여 충 당 금	8,536,399	
<b>부 채 총 계</b>		<b>17,613,928</b>
<b>자 본</b>		

I. 자 본 금		(5,012,954,929)
1. 기 본 재 산	5,012,954,929	
II. 운 영 수 지 차 액		366,032,564
1. 전기이월운영수지차액	352,316,141	
2. 당기운영수지차액	13,716,423	
자 본 총 계		5,378,987,49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b>5,396,601,421</b>

## 2) 운영성과분석

A 종교법인은 2010년 약 2.7억 원의 일반수입 중 급여 0.76억 원, 전력·보증비 1억 원 등 일반운영비로 약 2.9억을 지출하여 약 △0.2억 원의 운영수지차액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는 약 3.7억 원의 일반수입 중 급여 0.87억 원,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로 약 3.6억 원을 지출하여 약 0.1억 원 운영수지 차액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에는 약 3.8억 원의 일반수입 중 급여 등 일반운영비로 약 3.3억 원을 지출하여 약 0.2억 원의 운영수지차액을 나타내고 있다.

A 종교법인의 전체적인 일반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금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운영수지차액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비율대비 일반수입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표 3-2> A 종교법인의 2012년 수지계산서

(단위: 원)

과 목	금 액	
<b>I. 수 입</b>		<b>377,024,765</b>
1. 헌 금 수 입	362,693,539	
2. 이 자 수 입	6,589,288	
3. 기 타 수 입	7,741,938	
<b>II. 지 출</b>		<b>363,308,342</b>
1. 급 여	67,944,400	
2. 상 여 금	750,000	
3. 잡 금	19,570,000	
4. 퇴 직 급 여	6,281,858	
5. 복 리 후 생 비	20,954,261	
6. 세 금 과 공 과	297,030	
7. 광 고 선 전 비	250,000	
8. 차 량 유 지 비	2,606,390	
9. 수 선 비	3,502,650	
10. 교 육 훈 련 비		
11. 경 조 비		
12. 중 기 임 차 료		
13. 여 비 교 통 비	28,625,122	
14. 운 반 비	452,100	
15. 전 력 비	18,629,616	
16. 수 도 광 열 비	9,092,100	
17. 보 험 료	796,520	
18. 통 신 비	1,729,144	
19. 소 모 품 비	55,724,984	
20. 소 모 공 구 비	490,000	
21. 회 비 부 담 금	448,000	
22. 지 급 수 수 료	19,640,967	
23. 사 무 용 품 비	271,160	
24. 도 서 인 쇄 비	10,548,500	
25. 법 정 기 부 금	26,800,000	
26. 지 정 기 부 금	67,891,500	
27. 잡 지 출	12,040	
<b>III. 운 영 수 지 차 액</b>		<b>13,716,423</b>

### 3) 재무비율분석 추이 분석

A 종교법인의 재무비율분석을 일반 영리기업에서 수행하는 재무비율과 달리 운영성과분석에 따라, 국내 종교법인의 회계정보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몇 가지 관련 비율을 분석하였다.

## 4. A 종교법인의 재무제표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표시지침서와 비교<sup>1)</sup>

본 연구에서는 A 종교법인의 사례를 통해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종교법인의 회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종교법인의 재무제표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표시지침서에서 제시하는 필수재무제표와 계정과목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종교법인 회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 1) A 종교법인 재무제표와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 표시지침서와 비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표시지침서에 의하면 기업의 전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 성과표, 현금 흐름표, 주석을 일반인에게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 상태표로 구성된다.

기업은 당기 순 손익의 구성요소를 운영 성과표를 작성 순자산과 사업수익과 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종교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와 수지계산서만을 작성, 공시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1) 한국회계연구원(2003)pp.12~27일부 인용함

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자, 조직의 구성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에게 비영리 조직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영리조직의 유동성, 재무적인 신축성 및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현금과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 자산, 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및 자본항목으로는 기본금, 적립금, 차기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종교법인의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와 구성항목이나 배열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일시적 제약이 있는 자산이나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이나 제약이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차이가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A 종교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영리법인과 작성목적은 서로 상이하지만, 구성항목이 대동소이하므로 표준화된 회계기준에 맞추어 정비, 개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작성과 표시지침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단순화하는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 (2)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의 주된 목적은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의 영향 및 상호관계, 각종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의 사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리조직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운영성과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기부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들이 일정기간 조직의 성과, 서비스제공 활동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능력,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를 나타낸다.

비영리조직의 작성과 표시 지침서상 운영 성과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구분하여 손익을 구분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 외 수익 및 사업 외 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감소로 각각 손익을 표시한다.

그러나 A 종교법인은 입·출에 의한 수지계산서로만 기록하고 있으며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으로 고유목적사업 수익과 이에 따른 비용과 고유목적외의 사업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한 현금 입출금만 기재한 수지계산서만 작성하고 입출에 대한 차액기재 수준으로 일정규모이상 종교법인은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3)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에 걸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조직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2003.3.14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조직의 직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사업 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세 가지 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이러한 활동이 각각 재무 상태와 전체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및 각 활동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영리법인 현금흐름과 달리 사업 활동 현금흐름의 예로써 제약이 없는 기부로부터의 현금유입,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부로부터의 현금유입, 회비수입으로부터 현금유입 등이 있다.

그러나 A 종교법인은 현금흐름표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제법 규모가 있고 수십억의 출연재산이 있는 동 법인이 현금흐름표가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4) 주식

주식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기타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관련법규 등의 요구가 있는 사항으로 종교법인의 개황, 주요사업내용, 최근의 사업 환경변화 등으로 이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A 종교법인의 경우에도 각 종교법인의 재무제표 이해관계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재무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종교법인의 항목에 대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 2) A 종교법인과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 지침서와 계정과목 비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에서 최소한 구분 표시할 항목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 자산, 무형자산, 기타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 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 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부채의 배열 및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종교법인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자본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특히 종교법인의 성격상 재고자산이 없는 관계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과 같은 재고자산이 없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배열 및 표시에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유동성배열법을 적용하고 있다.

### (1)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상 유형자산은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타로 나누고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설비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설비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포함하며 설비자산의 개별 구성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하여 설비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 활동을 위해 건설 중인 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표시한다..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A 종교법인의 경우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등과 같은 유형 자산을 공시하고 있는데, 종교법인의 유형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유형 자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법인의 자본화된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의 기간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형 자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조작과 같은 분식회계의 도구로 악용되어질 여지가 있다.

## (2)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

세법에서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자산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형자산의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은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취득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에 의하면 무형자산 중 별도표시 항목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A 종교법인의 경우 아직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무형자산도 공시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차후에 성직자들의 설교나 특정 형태의 종교행위의 영상물 제작이나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한 종교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공시와 체계적인 감가상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출연부동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 중 선택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투자부동산의 분류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투자부동산의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고정자산의 한 항목으로 보아 세무처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A 종교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투자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산세 또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4)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을 첫째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의 의무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둘째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자기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 파생상품 또는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다면 발생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인식과 제거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품등외의 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A 종교법인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지만 각종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대차대조표에 공시되어진바, 향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항목들을 금융상품으로 공시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규정, 과세하는 것은 종교단체로부터 반발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 종교법인은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세법규정에 따라 납세를 하고 있지만, 이

는 다른 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또한 성직자의 원천징수 문제 또한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A 종교법인은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성실히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약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이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 제 2 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에 대한 분석

### 1. 종교법인의 회계기준 제정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종교법인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A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대해 대차대조표와 수지 계산서를 공시하지만, 이 역시 통일된 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 종교법인 자체적인 계정과목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 법인에서 항상 소비·지출되고, 수익 보다는 종교활동 과정에서 소비되는 속성이 있는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시스템으로 되는 것이므로 종교 법인의 회계시스템에서도 재정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회계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종교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할 회계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각 종교 단체별로 임의적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교법인 회계정보의 공개는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정보 이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종교법인 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 제정이 시급한 문제점이다.

###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대부분의 종교법인의 회계기장을 입·출금 위주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식부기는 단순히 현금의 수입과 지출 및 재산의 증감만으로 기록하는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단식부기는 간단·편리한 회계처리라는 장점으로 선호 하고 왔지만, 종교법인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현금 단식부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감가상각이나 대손처리와 같은 회계처리에 있어 단식부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식부기의 도입이 시급한 문제점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제51조에 의거 종교법인은 사업연도별 출연 받은 재산 및 고유목적외 사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운용수익을 일정금액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업운용 내용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제80조 제9항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이상 이면서 당해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이 5억 이상인 종교 법인에게 (수익금액+출연재산가액) $\times$ 0.07%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과세당국의 관리소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3. 출연재산의 보고이행 및 관리

종교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재산, 매각재산 등의 명세서 보고 누락 시 출연재산에 1%의 가산세 부과토록 하였으나 대부분 이러한 규정조차 알지 못하는 종교법인이 대부분이며 보고 누락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보고도 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 기장도 하지 않으니 용도의 사용 해당 재산인지, 수익사업에 따른 운용소득에 적정비율을 고유목적에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4. 감가상각등 제도의 도입

감가상각이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는 과정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을 구입 시 발생하며 구입시점을 제외하고 그 후는 자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은 투자된 자원의 회수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자산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각 기간에 걸쳐 올바른 배분이야 말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기간별 영업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 대부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

종교법인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취득한 출연재산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감가상각의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비영리 조직의 재산보존 책임보다 재산 운용책임을 중요시 하므로 감가상각의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 제 3 절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분석

#### 1. 법인세법상 종교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영리·비영리 법인 간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열거된 수익사업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 열거 수익사업은 고유목적과 관련이 없어도 과세하지 않는 모순이 된다.

수익사업 범위의 명확화로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정관상 수익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 그 자체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의 요건으로 그 소득원천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의 자금조달에 충족여부나 또는 고유목적사업과 별개의 목적사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익사업의 판단은 당해 사업의 행위가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행위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한다(소득 22601-884, 1985.8.24. 대법 81누 266. 1984.12.26)고 하고 있다. 또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수익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 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중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목적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에 제외토록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는 사업 활동이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적 상당횟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 자금조달 여부와는 불문으로

그 사업자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계속성, 반복적 판단을 수익사업의 범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제12조 각호에 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 자금조달 시에는 법인세법의 규정과 달리 상속증여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영리법인의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의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비교표와 같이 실비 정도만 받고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이라도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행정해석도 실비변상정도여부, 수익성여부에만 의하여 판별하고 고유목적여부에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치 않다. 또 영리성이 없더라도 공익목적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비정도만 받고 사업을 운영하면 비수익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혼선이 초래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무 대행 지원금</li> <li>• 기숙사비</li> <li>• 운전자금 대출자금 지원 사업</li> <li>• 근로자신용보증보험금</li> <li>• 새마을연수회교육생 실비정도 강사료, 급식비</li> <li>• 지진연구 실비수당</li> <li>• 실비초과 수강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골시설 실비수입</li> <li>• 실비훈련비 (직업훈련원)</li> <li>• 증권연수원 실비변상적수수료</li> <li>• 산업폐기물 실비변상적수수료</li> <li>• 대한무역진흥공사 박람회개최관련 실비 변상액</li> <li>• 기술연구원의 실비교재대금</li> <li>• 부두하역업체의 실비 변상적 경비 징수액</li> </ul>

## 2. 소득세법상 종교법인

종교단체의 이자·배당 소득을 수익사업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 5년간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60조에서는 비영리내국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통한 신고의무가 종결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분리과세 신고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과정에서

불 때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아닌 이자·배당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축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고 취득자인 종교단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고려하지 않으며 안 된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종교단체는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종종 나타난다.

종교법인이 양도자와 공모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는, 경상 및 특별예산 지출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탈루를 방조하는 경우와 대형교회 목회자 등의 근로소득세 탈세와 함께 종교단체에 가장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탈세유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3. 부가가치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부가가치세 납세나 면세 여부에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들 거래처 매출이 양성화되어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의 무지와 세법 인식 부족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세무서에 미제출 관행을 거래상대방이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교단체는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거래상대방 상대 과세사업자에 탈루까지 조장함으로 조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4. 상속·증여세법상 종교법인 출연재산의 과세제도

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2장 제1호에 의하면 종교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규정된 상당 운용사용비율이상 공익목적에 사용)의 용도의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세법 별지 제23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78조 제3호에 의거 보고서등 미제출 가산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출연하거나 직접공익사업에 규정된 운영사용 비율까지 사용한 후 그 이후에 공익목적에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미제출분 및 불분명 상당부분에 대한 재산가액의 1% 1억한도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법인중 규모가 큰 종교법인들조차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공익법인 출연보고서는 제출까지 하되 직접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변경에 대한 보고는 누락함으로 고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운용소득 사용의무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의무 및 가산세 부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제 4 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과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정리, 요약하였다. 본 절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교법인에 대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나머지 개선방안 등은 표준화된 회계기준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질 것이다.

### 1.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1)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1) 회계기준 제정

현재 종교 법인에게 적용할 만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없기 때문에 각 종교 법인들은 자체의 규정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회계처리의 목적이 정보제공보다는 관리적 관점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은 종교법인의 특수 환경에 맞지 않으며 통일된 종교 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없어 각종 분석 및 정책결정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동일한 종교법인 내에서도 예산편성이나 회계처리가 상이하며, 더욱이 각 법인이 기금 회계에 대하여 다양한 재무보고서 양식을 사용하므로 상호 비교가 어렵고, 회계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종교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종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도입, 시행함이 시급하다고 본다. 종교단체의 재무보고서가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당해 단체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에 대하여 보다 완전하고 명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준화된 종교법인만의 표준화된 회계기준의 도입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종교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종교법인 활동으로 인한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지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기장, 회계보고, 결산과 감사 등의 분야에서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이 작동될 때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다.

## (2) 장부비치 기장의 의무화

대부분의 종교법인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실시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단식부기의 이 같은 결함에도 많은 종교 법인이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종교법인의 특수성에 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취득도 예산지출의 처리로 충분하며 예산은 단순한 견적이 아니라 각 기관의 의사결정의 구체적이고도 최종단계의 행위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복식부기에 의한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은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동검증 기능으로 자산의 보호와 당해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교법인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복식부기 방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하기에, 현금주의 위주의 단식부기에서 벗어나 복식부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 (3) 출연재산의 국가기관에 보고 및 이행 관리 철저

종교법인은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출연재산이 대부분 현금이나 기타기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기부금 등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지만 때로는 일반 공익법인처럼 사회복지, 의료, 학교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공익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한 비공익성 수익사업 전용으로 형평성 문제와 증여세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출연재산보고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공익성 향상과 종교법인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출연용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 (4) 감가상각 도입

많은 종교법인은 많은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대체적으로 종교법인의 회계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추구와 관계있는 감가상각은 종교법인의 회계목적에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자체가 영리기업에서 수익비용대응에 의해서 수익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나 반면에 이윤추구의 동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조직전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법인의 회계가 예산회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종교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시 즉시 비용화하거나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할 시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는 방법은 유형자산의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건물, 차량, 방송기자재, 각종 비품에 대해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자산에 내용연수를 영리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하여 예산과 지출을 예측할 경우에 유익한 회계자료가 된다.

## (5)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국내 종교법인은 영리법인의 제도상 감사가 있듯이 종교법인도 외부상 감사가 있어 회계부정에 대하여 감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계감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로 선임되어 있어 현재의 감사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는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부분이 내부회계관리 제도이다.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종교법인의 재무제표가 종교단체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 종교단체의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5년에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바탕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각의 종교법인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종교기관마다 각자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자체 관리·심사·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 관련 효율을 감안하여 유·무상이나 상설화나 임시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출연재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가 포함된다.

## 2.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 법인세법상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실지실비정도만 받고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비수익사업이라고 하여도 실지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담이 없으나 수익사업에 따른 구분경리문제, 가산세규정에 따라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길 원하므로 이러한 판례, 심판결정이 나오나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실비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외 사용에 대한 실비변상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별에 따라 수익사업을 규정한 법인세법대로 집행하여 실지 구분기장 의무, 출연재산 보고의무 등의 혼란방지 및 투명성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 2) 소득세법상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대부분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라 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조와 제60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종교단체의 보다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기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도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종교재단법인처럼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종교법인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동일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종교단체를 의식해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과세의 공평성 측면이나 사회일반의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투명성요구 등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조속히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가산세부과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제출 해태사례 만연으로 거래상의 탈세의 온상이 된다.

또한 전산자료구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도출된 상호연계분석 및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고 종교단체의 순수하고 선의의 고유목적사업자인 종교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현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2%에서 0.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1%이나 종교법인등은 이에 10분의 1수준인 0.1%로 규정하여 종교법인 스스로 투명성과 근거과세에 이바지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제출의무를 다함으로 거래상대방까지 탈루대상이 됨을 방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투명성 분위기 조성과 상당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 4) 상속세법상 과세제도 및 출연재산에 대한 개선방안

매년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매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여부를 공익법인출연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용도의 사용 시 사용사유를 반드시 명기토록 해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일정금액 이상 출연재산에 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기적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제 4 장 결 론

비영리종교법인은 설립취지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비영리법인 비중이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확대되고 비영리 법인 중 종교법인이 61.3%에 해당되어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의 투명성 요구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종교법인에 지원해오고 있는 각종 지원 즉 결산보고의무나 사업용 계좌사용의무, 외부전문자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등 최대한 공익활동에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정부를 대행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잘 수행되도록 당연히 잘 지원하여 혜택이 부여하되 그와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회계제도 및 조세제도의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 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 조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종류에 따라 수익사업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해야 한다. 기장의무는 현재 대부분 종교법인이 영세하므로 영세한 종교법인에 일괄적으로 기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상속·증여세법상 기장의무가 부여된 일정규모(총자산 10억 이상)이면서 출연재산이 5억 이상)이상의 종교법인에 한하여 종교법인의 재무보고가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동검증이 가능한 복식부기로 작성을 의무화하여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내·외부 출연자들의 관계자

들에게 명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투명한 종교법인이 될 것이다.

첫째 2003년도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지침서가 사용하기 쉽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종교법인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각 영세한 종교법인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운용을 용이하게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종교법인의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는 현재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현금주의의 단식부기로 기장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중성과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복식부기의 기장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복식부기 도입 기장의무는 일정규모 이상 예로 총자산 10억 이상 이면서 출연 받은 재산이 5억 이상으로 제한하여 실질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감가상각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연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의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도입은 필요하다.

셋째,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은 대부분 종교법인이 자체적·임의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감사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에 의거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화, 명목적으로 감사가 실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 법에 따라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강제화·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정된 법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과세당국도 종교법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종교법인의 본래 목적에 따라 출연재산이 사용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서”는 제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되고 규정한 법규에 따라 보고서 미제출가산세 엄격한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법인의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부정을 예방하고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운영 평가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도 필요하다.

다섯째,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고유목적과 관련 여부 및 수익성과도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대로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수익성 즉 실비변상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영리법인과 형평성 및 수익성이 없으니 기장의무도 면제 받으려 하여 기장의무의 혼선과 종교단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왜곡·탈루의 검증

조차 피하려는 문제점이 있다.

여섯째 종교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문제는 정부역할 대행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비과세토록 하는 것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등 특례방법에 따라 환급받는 절차만 번거롭다. 이는 잘 몰라 분리과세 특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비과세방안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협력의무는 자료제출을 해태하는 사례가 만연함으로 종교법인이 거래상대방에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시정하면서 영세한 종교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의 가산세의 1/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종교법인의 거래질서가 바로 되며 탈루의 온상이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여덟째,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의 과세문제는 향후 지금까지와 다른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출연재산 보고문제와 함께 출연 받은 금액의 재산을 용도와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실지로 문제가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사후관리 소홀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일부에서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 및 출연자의 부의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로 정부대행 역할에 맞도록 출연재산이 철저히 운영되고 사후관리 점검 또한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도 종교단체의 용도 외 사용부분은 종교단체의 눈치만 보지 말고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다른 일반 영리법인과 형평성 문제도 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분리된 연구를 하나로 접목하여 현행 실무에서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세법에서 종교법인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와 더불어 종교법인에 과세제도 강화의 측면은 조세수입 목적보다 이를 통해 종교법인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3.
- 권재열, 장근호. 한국조세 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2004.
- 권영도. 교회회계. 2004.
- 김기열.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2008.
- 양대석. 동문. 교회회계의 이론과 실무. 2003.
- 장근호. 한국조세 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2004.
- 조현연. 한국공인회계사회. 종교법인의 바람직한 회계시스템 구축. 2004.
- 한국세무사회. 조세법전. 2012.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2.
- 한국회계연구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2003.

### <논문>

- 김광윤.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김명돌. 『비영리법인 회계정보공시제도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  
연구발표논문집. 1998.
- 김복윤.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완석, 송쌍중, 박훈, 유태현.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
- 김의효. 종교단체(법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범위. 지방세 연구 3월호. 2006.
- 김주연.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와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철기. 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연구 -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노병성.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문연식. 종교단체의 과세제도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서점순. 비영리법인회계제도에 관한 연구-종교법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예상국.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오정우.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임채문. 비영리공익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손정근.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와 재무보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연구. 충북대학교 경영석사학위 논문. 2012.
- 장만식.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출연과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경제. 1995.
- 장진범.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정대진. 한국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용근. 우리나라 비영리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학연구. 2001.
- 하홍준. 조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